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4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
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의 지정
으로 의회의 추천 절차를 배제하고 있어,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은 시장의 지정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같은 조례에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